

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 참고사항

I. 총 칙

1. 목적

이 지침서는 「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」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함으로써 이를 준거로 효율적인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용어 정의

-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(이하 커뮤니티 전문가)란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은평여성인력센터(2011년) 및 여성가족재단(2010년, 2012년)에서 커뮤니티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후 자치구로 최종 배치된 인원을 말한다.
- 담당자란 구청에서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 및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을 말한다.
- 공동체 활성화단체란 공동주택 내외주민 간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입주민 등 10인이상으로 구성된 단체(부녀회, 어머니회, 노인회 등 기존 자생단체)를 말한다.

II.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 및 관리

1. 위촉장 수여 및 서약서 체결

- 구청은 커뮤니티 전문가가 관할 단지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구청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한다.
- 구청은 커뮤니티 전문가에게 활동 조건 및 의무사항이 명시된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 서약서를 서명 받아 보관한다.

2. 상해 보험 가입

- 담당자는 커뮤니티 전문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커뮤니티 전문가를 단기 상해보험에 가입시킨다.

3. 활동 조건

- 활동 기간 : 2014. 2. 17 ~ 2014. 12. 31
- 활동 수당 : 매월 프로젝트 추진 활동결과물에 따라 활동비 지급
- 활동프로젝트에 따른 활동비 지급
 - 프로젝트 활동결과물에 따라 매월활동비를 지급하되 활동결과표 일일 프로젝트 추진일수를 참고하여, 1일 70,000원(식비 포함)기준으로 매월 프로젝트 총액을 산정하여 활동비 지급
 - 활동 일정은 프로젝트 추진에 맞는 일정으로 하되 프로젝트 활동결과표에 따라 활동 진행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진
 - 커뮤니티 전문가 워크숍 및 전체 교육시 커뮤니티 전문가가 참석할 경우에는 활동프로젝트에 포함하여 활동비 등 조치
- 활동 시간 : 프로젝트 활동시간은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등 활동단지의 일정에 맞출 필요가 있는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 (활동시간탄력제)

4. 활동 결과표 작성

-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 결과표를 작성 및 관리한다.
 - 커뮤니티 전문가는 프로젝트를 위한 활동 단지에서 추진한 활동결과표를 담당자에게 제출한다.
- 담당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등 단지의 비정형적인 일정을 감안하여 커뮤니티 전문가의 일일기준 활동시간은 규정하지 않는다
 - 다만, 프로젝트 추진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총기간을 일단위로 배분하여 일/6시간, 주 18시간이 되도록 안배하여 활동결과표 작성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.

5. 활동수당 지급

- 담당자는 활동결과표에 의한 활동단지 일수를 근거로 하여(활동일수 ×70,000원) 익월 10일까지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, 주민세를 공제한 월 총액을 커뮤니티 전문가의 계좌로 지급한다.
- 2014년 12월의 활동수당은 말일까지의 활동일수를 예측하여 12월 내 원인행위 확정 후 2015년 1월 10일까지 지급한다.

6. 결격 및 해촉 사유

- 커뮤니티 전문가의 결격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위촉 전 결격 사유에 해당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로 위촉된 경우 본 위촉을 무효로 한다.
 -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구청은 아래의 커뮤니티 전문가 해촉 사유 발생시 해당 전문가를 해촉 하여야 한다.
 - 프로젝트 추진 위촉 후에 상기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람
 - 프로젝트 활동시간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사람
 - 프로젝트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사람
 - 프로젝트 활동을 현저히 태만히 하거나 활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사람

Ⅲ.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 내용

1. 활동 범위 및 내용

- ①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
- ② 단지 특성 및 입주민 요구사항 수렴을 통한 단지 진단
- ③ 단지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커뮤니티 프로그램 발굴
- ④ 공동주택 각 주체와 연계하여 커뮤니티 사업계획서 작성
- ⑤ 공동주택내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 모색
- ⑥ 커뮤니티 사업 특성별 자원 봉사자 모집
- ⑦ 커뮤니티 사업 시행 및 추진 지원 및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평가
- ⑧ 커뮤니티 사업 종료 후 성공/실패 요인 분석하여 차기 사업에 반영
 - ※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단지를 중심으로 공동체 활성화단지 리더교육과정을 통한 공동주택 활성화단체 리더를 배출하여 주민주도형으로 추진
 - ※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리더교육을 추진하여 주민주도형으로 추진

2. 활동 결과서 제출

- 커뮤니티 전문가는 활동 기간 동안 다음의 보고서를 단지별로 제출한다.
 - ① 커뮤니티 활성화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서 : 2014년 3월 한
 - 단지 진단 및 입주민의 수요 파악 결과를 포함하여 향후 사업 방향 및 목표 개략적 추진방법 등 작성
 - 단위별 사업계획서는 종합계획에 첨부
 - ② 중간보고서 : 2014년 4월 ~ 2014년 10월 (익월 5일 까지)
 - 기 제출한 단위별 사업계획서 실적 등 추진 현황 작성
 - 신규 발굴한 단위별 사업계획서 첨부
 - ③ 최종보고서(각 단지별 1부) : 2014년 11월 한
 - 그간 추진했던 커뮤니티 사업 실적 등 추진 결과 총괄 작성
- 담당자는 커뮤니티 전문가의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, 내용 검토 후 서울시 공동주택과에 제출한다.

3. 유의 사항

- 구청은 커뮤니티 전문가의 활동 범위 외 다른 사항을 추가하여 활동 요청하지 않는다.

IV. 중도포기자 관리

- 커뮤니티 전문가는 중도 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 활동 종료 2주 전까지 담당자에게 이 사항을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.
- 담당자는 커뮤니티 전문가와의 협의 결과 중도 포기가 최종 결정된 경우 커뮤니티 전문가의 성명, 활동종료 예정일자 및 중도 포기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담당자는 중도포기한 커뮤니티 전문가의 활동 수당 미지급분을 활동종료 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

V. 시행 기간

본 참고사항은 커뮤니티 전문가가 위촉되어 서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사업 종료일인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.